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계룡시
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결산검사 의견서	1
I. 결산검사 개요	3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7
1. 재정의 개황	9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10
3. 기금의 결산	16
4. 재무제표의 결산	18
5. 성과보고서	20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2
III. 개선권고 사항	25

결 산 검 사 의 건 서

계룡시장 귀하

2019년 4월 2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로부터 계룡시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계룡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계룡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계룡시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계속비·평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어 개선 및 권고사항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회계연도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허	남	영
위 원	염	구	호
위 원	김	진	석



Handwritten signatures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허남영, 염구호, 김진석.

I. 결산 검사 개요

I. 결산검사 개요

1. 검사 개요

(기간) 2019. 4. 5. ~ 2019. 4. 24. (20일간)

(장소) 계룡시청 상황실 및 감사상황실

(방법) 2018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토대로 결산내용 검사

(관계자 의견청취)

2.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선임)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위촉) 2019. 3. 29.(의장실)

(명단) 위원 3인

구분	성명	담당업무	비고
대표위원	허 남 영	결산검사 총괄	계룡시의원
위 원	염 구 호	세출분야	전직공무원
위 원	김 진 석	세입분야	세 무 사

3. 검사 중점사항

(1) 세입분야

- ① 합리적인 세수판단 및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
- ② 지방세 부과, 징수, 결손 및 과오납 등의 적정 여부
- ③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여부
- ④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2) 세출분야

- ① 세출예산의 적법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
- ② 이월액의 적정성 및 불용액에 대한 타당성 검사
- ③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3) 기금의 결산

- ① 기금운용 현황
- ② 기금관리 운영의 적정성 여부

(4) 재무제표의 결산

- ① 재무제표의 전반적 적정성에 대한 검사

(5) 성과보고서

- ① 성과계획의 적정성 여부
- ② 성과실적의 신뢰성 여부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① 채권현재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 ② 채권·채무 관리의 적정 여부
- ③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대장 등재 여부
- ④ 정수물품관리실태 및 현재액의 일치 여부

(7) 결산관계서류

- ① 세입·세출회계별 결산액의 금고의 마감계수와 상위 여부
- ② 결산서 및 결산설명 부속 자료 등 결산관계서류의 내용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등 관계계수 정확성
- ③ 출납공무원이 출납한 세입금을 출납정리기한(1.20)까지 금고에 납입·완료하였는지 확인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계룡시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회계	세입	152,643	158,789	164,095	177,770	206,173
	세출	119,712	124,755	134,670	136,262	144,126
	결산상잉여금	32,932	34,034	29,425	41,508	62,047
공 기 업 특별회계	세입	42,717	43,137	38,797	36,134	44,734
	세출	26,986	27,379	24,059	13,074	14,275
	결산상잉여금	15,731	15,758	14,738	23,060	30,458
기 타 특별회계	세입	252	163	210	220	3,418
	세출	236	148	198	198	298
	결산상잉여금	16	14	11	21	3,120
총계	세입	195,613	202,088	203,102	214,124	254,324
	세출	146,934	152,283	158,927	149,535	158,699
	결산상잉여금	48,679	49,806	44,174	64,589	95,625

- 계룡시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254,324백만원, 총세출은 158,699백만원으로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95,625백만원이다.
-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4.9% 높으며, 세출대비 세입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21,178백만원 증가하였다.
- 최근 5년 평균증가율은 세입은 6.8%, 세출은 1.9%로 세입의 증가율이 높으며, 잉여금의 증가율은 18.4%로 지난 4개년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잉여금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총괄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계	245,726,832,380	254,323,987,040	158,698,597,150	95,625,389,890
일반회계	204,462,349,920	206,172,576,969	144,125,684,950	62,046,892,019
특별회계	41,264,482,460	48,151,410,071	14,572,912,200	33,578,497,871
공기업특별회계	37,852,137,460	44,733,603,527	14,275,332,490	30,458,271,037
기타특별회계	3,412,345,000	3,417,806,544	297,579,710	3,120,226,834

구분	현년도 채무 상환	이월액(D)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	9,660,560,800 -	1,064,109,970 -	18,403,976,150 (1,507,400,000)	1,012,514,388	65,484,228,582
일반회계	-	5,375,054,050 -	1,064,109,970 -	17,866,366,380 (1,507,400,000)	1,008,744,170	36,732,617,449
특별회계	-	4,285,506,750	-	537,609,770	3,770,218	28,751,611,133
공기업특별회계	-	4,285,506,750	-	537,609,770	23,558	25,635,130,959
기타특별회계	-	-	-	-	3,746,660	3,116,480,174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4,323,987,040원으로 예산현액 245,726,832,380원보다 8,597,154,660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2.4%인 158,698,597,15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5,625,389,890원이다.

○ 이중 명시이월비 9,660,560,800원, 사고이월비 1,064,109,970원 및 계속비이월 18,403,976,150원과 보조금반납금 1,012,514,388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5,484,228,582원이다.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204,462,349,920	209,547,957,454	206,172,576,969	188,549,190	3,186,831,295
전 년 도	174,759,707,770	181,169,497,206	177,770,415,696	161,722,810	3,237,358,700
증 감	29,702,642,150	28,378,460,248	28,402,161,273	26,826,380	△50,527,405

○ 본 회계연도는 예산현액 204,462,349,920원의 102.5%인 209,547,957,454원을 징수결정하여 100.8%인 206,172,576,969원을 수납하였고, 1.5%인 3,186,831,295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5.9%인 188,549,190원이 결손처분됨.

○ 예산현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6.9%인 29,702,642,15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국도비)이 증가된데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당해연도 98.4%로 전년도 대비 0.3%p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당해연도 100.8%이고, 전년도는 101.7%로서 전년도에 비해 0.9%p 감소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61,722,810원 보다 26,826,380원이 증가한 188,549,190원으로서 사유로는 시효소멸 6,800,930원, 무재산 180,803,260원, 기타 945,000원 등이며, 향후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행정절차가 필요함.

특별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04,462,349,920	209,547,957,454	206,172,576,969	188,549,190	3,186,831,295
지 방 세	18,200,000,000	20,757,661,550	19,033,097,830	185,604,190	1,538,959,530
세 외 수 입	4,348,242,000	8,202,272,044	6,551,455,279	2,945,000	1,647,871,765
지방교부세	82,315,000,000	84,664,016,080	84,664,016,080	-	-
조정교부금등	16,469,100,000	17,390,588,000	17,390,588,000	-	-
보 조 금	39,169,197,000	34,962,597,100	34,962,597,100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960,810,920	43,570,822,680	43,570,822,680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2%인 19,033,097,83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2%인 6,551,455,279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1.1%인 84,664,016,080원으로 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8.4%인 17,390,588,000원, 보조금은 16.9%로 34,962,597,1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1%인 43,570,822,680원이 수납되었음.

○ 국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39,169,197,000원 보다 무려 4,206,599,900원이 적은 34,962,597,100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거나 마무리 추경에 교부가 확실치 않은 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발생하였음.

○ 수입액은 금고의 총수입 증명서와 부합함.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당해연도	186,480,956,000	17,981,393,920	(99,188,240)	253,986,000
전년도	158,419,738,000	16,339,969,770	(57,518,000)	224,037,000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액/ 예산현액 (%)
204,462,349,920	144,125,684,950	25,812,930,400	34,523,734,570	70.5%
174,759,707,770	136,262,268,376	17,981,393,920	20,516,045,474	77.9%

- 예산액은 186,480,956,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7,981,393,92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04,462,349,920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5%에 해당하는 144,125,684,950원이며 이월액은 25,812,930,4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5,375,054,050원, 사고이월액은 1,064,109,970원, 계속비이월액은 17,866,366,380원(자금없는 이월 1,507,400,000원 포함)으로 그 주요내용은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소하천정비(생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이 있으며, 건설교통과의 생활환경정비(농소외 5지구)사업 등 2개 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균특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월시킨 사실이 있었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9%에 해당되는 34,523,734,57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28,197,835,000원, 지출잔액 4,214,807,188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2,344,230원, 보조금정산잔액 1,020,940,382원 등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지출잔액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지출액은 금고의 지출액 증명서와 부합함.

(3)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㉑	징수 결정액㉒	실제 수납액㉓	불납 결손	미수납액	비율(%)	
						㉑/㉒	㉑/㉓
특별회계	41,264,482,460	48,440,028,121	48,151,410,071	-	288,618,050	116.7	99.4
공기업특별회계	37,852,137,460	45,022,221,577	44,733,603,527	-	288,618,050	118.2	99.4
상수도사업	17,810,111,660	20,427,847,985	20,309,338,275	-	118,509,710	114.0	99.4
하수도사업	7,899,458,000	12,233,549,595	12,063,441,255	-	170,108,340	152.7	98.6
공영개발사업	12,142,567,800	12,360,823,997	12,360,823,997	-	-	101.8	100.0
기타특별회계	3,412,345,000	3,417,806,544	3,417,806,544	-	-	100.2	100.0
의료급여기금	303,820,000	308,542,314	308,542,314	-	-	101.6	100.0
장기미집행	9,197,000	9,923,490	9,923,490	-	-	107.9	100.0
폐기물처리	3,099,328,000	3,099,340,740	3,099,340,740	-	-	100.0	100.0
2017년 합계	32,877,728,890	36,955,249,861	36,353,620,621	-	601,629,240	110.6	98.4

○ 수납액 48,151,410,071원은 예산현액 대비 116.7%로 전년대비 6.1%p 증가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4%로서 전년대비 1.0%p가 증가했으며, 미수납액은 288,618,050원으로서 전년대비 52%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가급적 정확한 추계를 통해 누락 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정확성이 요구됨.

○ 수납액은 시금고의 총수입 증명서와 부합함.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

과 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㉓	집행잔액 ㉔	집행비율
					예산대비 ㉒/㉑
특별회계	41,264,482,460	14,572,912,200	4,823,116,520	21,868,453,740	35.3%
공기업특별회계	37,852,137,460	14,275,332,490	4,823,116,520	18,753,688,450	37.7%
상수도사업	17,810,111,660	5,473,624,410	4,812,116,520	7,524,370,730	30.7%
하수도사업	7,899,458,000	7,457,449,020	11,000,000	431,008,980	94.4%
공영개발사업	12,142,567,800	1,344,259,060	-	10,798,308,740	11.1%
기타특별회계	3,412,345,000	297,579,710	-	3,114,765,290	8.7%
의료급여기금	303,820,000	297,579,710	-	6,240,290	97.9%
장기미집행	9,197,000	-	-	9,197,000	-
폐기물처리시설	3,099,328,000	-	-	3,099,328,000	-
2017년 합계	32,877,728,890	13,272,567,660	1,471,534,460	18,133,626,770	40.3%

○ 예산현액은 41,264,482,46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5.3%에 해당하는 14,572,912,2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9%에 21,868,453,740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4,823,116,52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4,285,506,75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537,609,770원임.

○ 지출액은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상의 지급액과 부합함.

3. 기금의 결산

○ 본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 현황

(단위: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합계(8개 기금)	5,994,685,647	32,688,326	416,085,126	383,396,800	6,027,373,973
지방채상환기금	39,907,450	16,610	16,610	-	39,924,060
노인복지기금	462,605,940	68,445,680	68,445,680	-	531,051,620
자활기금	100,600,000	51,042,640	51,042,640	-	151,642,640
재난관리기금	491,908,792	75,654,646	190,973,836	115,319,190	567,563,438
체육진흥기금	1,350,124,311	13,667,140	13,667,140	-	1,363,7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440,054,486	△183,073,350	55,160,060	238,233,410	256,981,136
식품진흥기금	69,302,262	620,880	620,880	-	69,923,142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	3,040,182,406	6,314,080	36,158,280	29,844,200	3,046,496,486

○ 현재 계룡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5,994,685,647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16,085,126원을 더하고, 사용액 383,396,800원을 공제한 6,027,373,973원이다.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1,154	5,532	5,616	5,807	5,995	△14.4
당해연도 조성액	653	5,973	4,149	413	4165	△10.6
당해연도 사용액	6,275	5,889	3,959	225	3835	△50.3
당해연도말 조성액	5,532	5,616	5,807	5,995	6,0275	2.2

○ 계룡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최근 5년간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준 평균 2.2%p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시금고의 잔액증명과 부합함.

4. 재무제표의 결산

(1) 재정상태와 운영결과

(단위: 원, %)

구분	2018	2017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산	1,043,604,428,243	1,015,145,281,768	28,459,146,475	2.8
I.유동자산	152,872,194,316	126,292,249,928	26,579,944,388	21.0
II.투자자산	1,772,191,675	2,237,895,825	△465,704,150	△20.8
III.일반유형자산	144,248,357,300	141,806,023,942	2,442,333,358	1.7
IV.주민편의시설	191,392,776,219	197,278,868,714	△5,886,092,495	△3.0
V.사회기반시설	550,903,276,303	546,206,675,533	4,696,600,770	0.9
VI.기타비유동자산	2,415,632,430	1,323,567,826	1,092,064,604	82.5
부채	48,527,425,467	53,241,698,229	△4,714,272,762	△8.9
I.유동부채	4,909,022,727	4,300,225,325	608,797,402	14.2
II.장기차입부채	-	-	-	-
III.기타비유동부채	43,618,402,740	48,941,472,904	△5,323,070,164	△10.9
순자산	995,077,002,776	961,903,583,539	33,173,419,237	3.4
I.고정순자산	844,650,367,806	836,966,053,234	7,684,314,572	0.9
II.특정순자산	15,256,427,961	15,233,071,423	23,356,538	0.2
III.일반순자산	135,170,207,009	109,704,458,882	25,471,232,054	23.2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043,604,428,243	1,015,145,281,768	28,459,146,475	2.8

○ 2018회계연도 말 계룡시의 자산은 10,43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84억원 (2.8%)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이 증가한데 기인함.

○ 반면 부채는 485억원으로 전년보다 47억원(8.9%) 감소하였음.

(2)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사업순원가(가-나)	56,158	56,564	(406)	-0.72%
가. 사업총원가	106,767	95,825	10,942	11.4%
나. 사업수익	50,609	39,261	11,348	28.9%
II.관리운영비	31,735	29,459	2,276	7.73%
III.비배분비용	8,030	6,849	1,181	17.24%
IV.비배분수익	7,380	8,700	(1,320)	-15.17%
V.재정운영순원가 (I +II +III-IV)	88,543	84,172	4,371	5.19%
VI.일반수익	120,153	110,375	9,778	8.86%
VII.재정운영결과 (V-VI)	(31,610)	(26,203)	(5,407)	-20.64%

○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1,067억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06억원을 차감한 561억원이며, 순원가가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144억, 환경보호 105억원임.

○ 또한, 2018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08억원, 경비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9억원, 기타비용 7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38억원, 기타수익 35억원으로 각각 구성되어있음.

○ 2018회계연도 계룡시의 재정운영결과는 △316억원으로 전년도의 △262억원 보다 △54억원(20.64%)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배분수익 및 일반수익이 85억원 증가하였음.

5. 성과보고서

계룡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계룡시는 본 회계연도의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8개)-정책사업 목표(64개)-단위사업(9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부서명	성과목표						달성율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8	64	94	20	53	21	78%	
기획감사실	1	2	5	3	1	1	80%	
사회복지실	1	11	12	5	4	3	75%	
자치행정과	1	5	8	3	2	3	63%	
안전총괄과	1	5	7	1	4	2	71%	
민원봉사과	1	2	5	0	5	0	100%	
세무회계과	1	2	5	1	4	0	100%	
문화체육과	1	6	7	1	3	3	57%	
환경위생과	1	6	6	1	3	2	67%	
지역경제과	1	5	9	3	4	2	78%	
농림과	1	3	5	1	2	2	60%	
건설교통과	1	6	7	0	4	3	57%	
도시주택과	1	1	3	0	3	0	100%	
군문화엑스포지원단	1	1	1	0	1	0	100%	
보건소	1	2	5	0	5	0	100%	
농업기술센터	1	2	3	1	2	0	100%	
의회사무과	1	1	2	0	2	0	100%	
공공시설사업소	1	2	2	0	2	0	100%	
상하수도사업소	1	2	2	0	2	0	100%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100% 달성 부서가 7개 부서 였던데 비해 당해연도에는 민원봉사과 등 9개 부서에서 100%를 달성하였고, 전체 달성율은 전년도 80%에서 다소 낮아진 78%임.

-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 간에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간에도 연계가 되도록 작성 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정책사업목표와 단위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며 성과지표를 정함에 있어 별다른 노력 없이도 100%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표를 정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정하고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달성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할 때에는 내실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 다음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제고가 필요함.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 전년도말 현재액은 1,744,449,720원에서 당해연도에 3,180,856원이 발생하고 6,150,046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741,480,530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발생액 (나)	당해연도 소멸액 (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라)=(가)+(나)-(다)
합계	1,744,449,720	3,180,856	6,150,046	1,741,480,530
일반회계	1,744,449,720	3,180,856	6,150,046	1,741,480,530

(2) 채무

- 해당없음.

(3) 공유재산

- 2018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계	44,743	631,493,992,449	1,713	74,574,399,682	824	36,572,696,697	45,632	669,495,695,434	
계	44,440	610,724,209,443	1,672	35,150,740,969	564	18,365,919,843	45,548	627,509,030,569	
행정재산	공용재산	652	123,584,106,093	91	5,399,308,470	333	975,608,870	410	128,007,805,693
	공공용재산	43,787	486,940,710,710	1,581	29,751,432,499	231	17,390,310,973	45,137	499,301,832,236
	기업용재산	-	-	-	-	-	-	-	-
	보존용재산	1	199,392,640	-	-	-	-	1	199,392,640
일반재산	303	20,769,783,006	41	39,423,658,713	260	18,206,776,854	84	41,986,664,865	

- 검사 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8,001,702,985원이 증가한 669,495,695,434원이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31,493,992,449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토지 4,002,764m²/411,242,629,204원, 건물 80동/132,005,133,530원, 기타 입목죽 등 42,880건/126,247,932,700원으로 총 669,495,695,434원 상당이다.

(4) 물품

-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증감 현황

(단위 : 개, 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증	감	
합 계	수 량	464	25	58	431
	금 액	4,042,674,270	234,098,270	5,110,000	4,271,662,540

- 검사 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228,988,270원이 증가한 4,271,662,540원이 확인되었다.
-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6종/464개 4,042,674,270원에서 2018년 5종/25개 234,098,270원을 취득하고, 10종/58개 5,110,00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30종/431개 4,271,662,540원이다.

Ⅲ. 개선 권고 사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개요

- 검사대상 : 2018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
- 기간 : 2019. 4. 5. ~ 4. 24.(20일간)
- 검사위원 : 3명(시의원 1, 전직공무원, 세무사1)
- 검사결과 : 개선 권고사항 8건

개선권고사항(8건)

개선권고사항	부서
1.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등 예산운용 철저	정책예산담당관 (예산팀 총괄)
2.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정책예산담당관 (예산팀 총괄)
3.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조치	해당 부서
4. 이월예산(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등) 최소화 조치	해당 부서
5.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해당 부서
6.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기금운용 부서
7.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철저	해당 부서
8. 기타 의견	전부서

1. 순세계잉여금발생 최소화 등 예산운용 철저

□ 현황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예산현액	149,387	156,862	160,182	174,759	204,462	
세입결산액(A)	152,643	158,788	164,095	177,770	206,172	
세출결산액(B)	119,711	124,755	134,670	136,262	144,126	
결산상잉여금	32,932	34,033	29,425	41,508	62,047	
순세계잉여금(C)	18,394	16,432	12,243	22,706	36,733	
순세계잉여금비율 (C/A)	12.1	10.3	7.5	12.8	17.8	
전년대비 증감률(%)	-	89.3	74.5	185.5	161.8	

□ 개선이 필요한 사항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이 10%를 넘고 있고(2016년도만 10% 미만임), 특히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67억원이 발생되어 세입결산액 대비 17.8%로 지난 4개년과 비교해볼 때 월등히 높으며 타시군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이는 예산운용에 걱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며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 회계연도에 세출예산의 절감, 세수의 증가,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현황

○ 성과보고서 분석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서명	전 략 목 표 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원인분석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지표수	달 성 지 표 수	미달성 지표수	실시	미실시
계	18	64	94	20	53	21	40	1
기 획 감 사 실	1	2	5	3	1	1	4	0
사 회 복 지 실	1	11	12	5	4	3	8	0
자 치 행 정 과	1	5	8	3	2	3	6	0
안 전 총 괄 과	1	5	7	1	4	2	3	0
민 원 봉 사 과	1	2	5	0	5	0	0	0
세 무 회 계 과	1	2	5	1	4	0	1	0
문 화 체 육 과	1	6	7	1	3	3	4	0
환 경 위 생 과	1	6	6	1	3	2	3	0
지 역 경 제 과	1	5	9	3	4	2	5	0
농 립 과	1	3	5	1	2	2	2	1
건 설 교 통 과	1	6	7	0	4	3	3	0
도 시 주 택 과	1	1	3	0	3	0	0	0
군문화엑스포지원단	1	1	1	0	1	0	0	0
보 건 소	1	2	5	0	5	0	0	0
농 업 기 술 센 터	1	2	3	1	2	0	1	0
의 회 사 무 과	1	1	2	0	2	0	0	0
공공시설사업소	1	2	2	0	2	0	0	0
상하수도사업소	1	2	2	0	2	0	0	0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며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수립한 성과목표를 토대로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달성여부를 분석하여 환류토록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성과달성 분석결과 성과미달성(달성도 100%미만), 성과초과달성(달성도 130%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이 필요한 사항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년도에 작성한 성과계획상의 정책사업목표 개수와 지표수 등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성과계획을 변경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 할 때는 원인분석을 하여야 함에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년도에 작성한 성과계획서상의 전략목표는 17개인데 성과보고서에는 18개로, 정책사업 목표는 65개인데 64개로, 지표수는 95개인데 94개로 상이하게 작성하면서 원인분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간에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간에도 연계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에도 일부부서에서는 서로 연계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며 성과지표를 정함에 있어 별다른 노력 없이도 100%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표를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성과미달성 지표와 초과달성지표에 대하여는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철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깊이 있는 분석이 되지 못하고

형식에 가까운 분석이 된 사례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업무담당자의 열의와 노력이 있어야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정하고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 초과달성·미달성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할 때에는 내실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 다음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 할 때에는 전년도에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작성하고,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성과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이 필요 할 경우 반드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변경사유를 밝히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조치

□ 현황

① 예산전액 미집행 사업현황

(단위: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지출잔액	사유
계	20건	94,935,000	-	94,935,000	
사회복지실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899,000	-	899,000	지급 자격이 되는 대상자(청소년한부모)가 없어 집행잔액 발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000,000	-	5,000,000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지원자가 없어 잔액발생 (2019년 홍보계획 : 계룡사랑소식지 분기홍보, 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조사를 통해 홍보)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600,000	-	600,000	道 발달지원센터로 이관된 사업임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제도 지원	792,000	-	792,000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이 없어 정보공개 심의회 미개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	1,900,000	-	1,900,000	2018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취소로 보조금 전액 반납(2018. 12월)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 고용 보조금	61,200,000	-	61,200,000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업이 없어 잔액 반납
농림과	농업인 교육행사 참가비 지원	808,000	-	808,000	사유 미발생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자체)	1,026,000	-	1,026,000	국비 우선 집행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2,000,000	-	12,000,000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충남 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	500,000	-	500,000	사유 미발생
	폐축사 처리비용 지원	700,000	-	700,000	사유 미발생
	특수가축 구제역 백신접종 포획접종 지원	2,400,000	-	2,400,000	사유 미발생
	해충구제약 지원	350,000	-	350,000	사유 미발생
	구제역 예방접종기구 지원사업	1,750,000	-	1,750,000	사유 미발생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1,800,000	-	1,800,000	사유 미발생
	한우 DNA 친자감별 검사 지원	300,000	-	300,000	사유 미발생
	식목일 행사 추진	1,080,000	-	1,080,000	식목일 행사 우천으로 취소 미집행
	산사태 예방관리	630,000	-	630,000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시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나 위원회 미개최로 미지급
	무궁과 큰잔치 행사 지원	960,000	-	960,000	미출품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240,000	-	240,000	공무직(농기계순회보조원) 미충원에 따른 급량비 미집행

② 예산현액 대비 지출잔액의 비율이 높은(50%이상) 사업현황

(단위: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지출잔액	비율	사유
계	29건	614,809,400	179,507,180	435,302,220	71	
기획감사실	공 직 자 재 산 등 록	1,900,000	295,380	1,604,620	84	일반 수용비 지출액 절감 금융거래 정보통보비용 절감(공직자 재산심사 과정에서 금융거래동의서 100% 제출)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심사와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면심사 개최(2018.11.23.) 예정이었으나 서면심사로 전환(위원 일정 조정 불가)되어 예산미집행
	시민 행정감사 참여 확대	2,400,000	1,000,000	1,400,000	58	시민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 지급 잔액
	시민 편익 위주의 법규운용	3,115,000	1,556,400	1,558,600	50	법무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절감 및 청문 실시 횟수 감소
	공공기관유치 활동지원	5,160,000	1,190,000	3,970,000	77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참석수당 및 행사실비 지출 요인이 없어 잔액 발생
	규제개혁 추진 강화	7,320,000	2,705,110	4,614,890	63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및 사무관리비 잔액
	계룡대와의 상생·화합 행 사 운 영	2,100,000	387,500	1,712,500	82	군부대 일정으로 행사추진이 어려워 행사운영비, 여비 잔액 발생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750,000	1,682,000	2,068,000	55	사회복지사 교육 이수대상자 35명에게 지급 하였으며 추가교육이수자 미발생
	행 여 자 관 리	740,000	158,300	581,700	79	행여자 발생 수 감소로 예산 미집행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	11,786,000	1,187,920	10,598,080	90	업무면 맞춤형복지팀에서 市 통합사례관리 전담하여 예산 미집행
	여성청소년행사 실비보상	7,600,000	3,494,800	4,105,200	54	여성, 청소년 관련 道행사 및 각 시군 워크숍 참석시 관련 단체 참석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마다 상시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잔액 발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 립 정 착 금	15,000,000	3,000,000	12,000,000	80	지급 자격 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 집행잔액 발생 (지급대상:부모가족복지시설에 2년이상 기거후 퇴소하는 세대/ 지급방법:시설퇴소와 동시에 3,000천원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자녀 보 조 학 습 비 지 원	20,000,000	3,466,670	16,533,330	83	지급 자격 대상자가 약 4-6명으로 집행잔액 발생 (지급대상: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 지급방법:1인 연800천원 내외)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3,840,000	724,000	3,116,000	81	예산대비 장애인신문 구독 육구 조사결과 신청요청자수 적음(2019년 예산액 감소)
환경 위생과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5,800,000	2,105,200	3,694,800	64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사용 잔액
농림과	농업정책개발 업무추진 지원	12,025,000	5,607,200	6,417,800	53	농정심의회, 학교급식심의회 등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미지급,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농업인 재녀학자금 지원사업	7,200,000	1,289,400	5,910,600	82	신청대상 학생수 감소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사업	100,000,000	18,347,040	81,652,960	82	지원금액 축소에 따른 농가 신청량 감소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 지원	7,695,400	1,768,400	5,927,000	77	사업 신청량 감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51,000,000	8,707,740	42,292,260	83	논에서 밭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값 상승하여 농가참여 저조
	지역 혁신모델 구축사업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5,675,000	1,482,200	4,192,800	74	국비사업의 사업량 부족으로 자체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나 농가 신청량 감소
	4월 7~8일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비	5,000,000	1,500,000	3,500,000	70	국비는 디브레인시스템을 통해 집행하여 지방비만 계상하여야 했으나 국비까지 편성함

	7~8월 폭염 및 가뭄 피해 복구비	17,000,000	5,100,000	11,900,000	70	국비는 디브레인시스템을 통해 집행하여 지방비만 계상하여야 했으나 국비까지 편성함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14,400,000	2,625,230	11,774,770	82	가축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사업 신청량 감소
	산불방지 대책(자체재원)	26,842,000	8,457,980	18,384,020	68	산불진화장비 고장 시 수리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나 장비의 고장률이 낮아 불용
	공원 녹지업무 추진 지원	3,200,000	1,596,000	1,604,000	50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도 시 주 택 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3,440,000	1,040,000	2,400,000	70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었음
보 건 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룎 비 지 원	14,196,000	6,610,280	7,585,720	5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수, 지원액 감소로 예산잔액발생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없음 - 2018년 미숙아 입원치료비 지원대상: 10명 (1인당 300~1,000만원 한도) ※ 미숙아로 태어나 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의료비 - 2018년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0명(1인당 500만원한도) ※ 출생후 28일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수술 치료한 의료비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	254,225,000	92,042,750	162,182,250	64	치매안심센터 예산의 인건비(182,000천원) 71.5% 차지하며 인력충원 안되어 잔액 발생됨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 하 수 도 업 무 추 진	2,400,000	379,680	2,020,320	84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당해에는 용도에 맞게 지출할 건수가 2건만 발생함.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는 720천원으로 삭감)

□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규모, 성격,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사업에 소요 될 예산만을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 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 등을 하여 다른 사업 등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에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잔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가 5개 실·과·소에서 총20건에 94,935,000원이 되고, 예산액의 50%이상을 지출잔액으로 남겨 불용 처리한 사례가 7개 실·과·소에서 총29건에 435,302,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실에서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공공후견활동 비용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경우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예산잔액을 불용처리 하였고,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도 결산에서는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하였고, 2018년도에는 예산액의 90%를 불용처리 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 '먹는물 공동시설개선사업'의 경우 2017년도 결산에서는 예산전액을, 당해 연도에는 예산액의 64%를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잔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추경예산 등에서 예산액을 삭감하거나 감액조치 등을 실시하여 회계연도 결산 시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월예산(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등) 최소화 조치

□ 현황

2018회계연도 이월예산(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이월사유(예산일부이월사유) ·지출액사용처 ·집행 잔액 발생이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54건	46,241,712,920	20,112,795,468	25,812,930,400	5,375,054,050	1,064,109,970	19,373,766,380	315,987,052	0.68	
사회복지실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2,862,554,200	244,823,010	2,617,731,190			2,617,731,190	-	0.00	사업비증액으로 도 계약심사 필요에 의하여 공사 착공지연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 증축	631,192,000	18,450,000	612,742,000	612,742,000			-	0.00	2018.12월설계 완료에따른사업기간부족 설계용역비18,450천원지출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	217,000,000	11,456,990	205,543,010	188,543,010	17,000,000		-	0.00	사업기간부족(농소1리:12월설계 완료,광석2리 토목설계병행에따른사업기간부족) ·농소1리설계용역비:11,456,990지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85,100,000	-	66,609,500		66,609,500		18,490,500	21.73	2018.10월국도비교부결정에따른사업기간부족 2019.2월집행완료 집행잔액발생이유:입찰차액 발생
	장애인협회 건물 이전	805,000,000	414,429,900	384,263,000	384,263,000			6,307,100	0.78	
	어린이집 확충	922,020,000	27,610,000	894,410,000			894,410,000	-	0.00	2018.10월 설계용역 제안공모 추진 설계 진행중으로 당해년도 미집행
	어린이 감성체험장 조성	118,800,000	-	116,303,000		116,303,000		2,497,000	2.10	2018.10월 설계용역 제안공모 추진 설계 진행중으로 당해년도 미집행
안전총괄과	계룡시 CCIV 통합관제센터 운영	1,201,681,000	1,045,111,750	100,000,000	100,000,000			56,569,250	4.71	이월:2018년하반기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사업기간부족으로이월 잔액:공공요금등절약및관제센터 유지보수계약 잔액등

	재난대비 문제차량 번호인식 및 지능형 CCTV 설치	400,000,000	-	400,000,000	400,000,000			-	0.00	2018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재난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	700,000,000	261,646,500	400,000,000	400,000,000			38,353,500	5.48	이월:2018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잔액:2018년재난안전정보전광판노후교체사업계약잔액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120,000,000	36,000,000	84,000,000	84,000,000			-	0.00	조달청 계약지연으로 착수지연 및 용역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
	소 하 천 정 비 (생 활)	4,185,826,950	3,663,919,450	521,907,500	424,200,880	97,706,620		-	0.00	보상지연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
민원봉사과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보조)	59,085,000	43,344,000	15,740,900	15,740,900			100	0.00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수 정비	219,000,000	77,510,000	96,199,000		96,199,000		45,291,000	20.68	모원재동재부분정비에서철거후전체복원으로 사업계획변경(2019년사업과연계추진)
	시정홍보 업무 지원	133,796,000	83,086,500	50,000,000	50,000,000			709,500	0.53	생산업체의물량부족으로 업무수행 가능* 차량의 조달 구매 불가 (*1회 총진 주행거리 300km이상)
	직장운동경기부(계룡시청펜싱팀) 운영	776,411,000	763,159,968	12,901,000		12,901,000		350,032	0.05	국비(기금)교부시기 연기로 사업추진 시기가 촉박함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869,955,000	795,288,660	23,355,600		23,355,600		51,310,740	5.90	국민체육센터도시관리계획결정(체육공원)유관기관 협의 지연
	체육진흥시설 지원(신도안면 풋살경기장 조성)	500,000,000	475,258,320	20,391,160		20,391,160		4,350,520	0.87	잔디유지보수, 부대시설 설치등을 위한 사업비 이월
	체육진흥시설 지원(신도안면파크골프장 조성)	979,469,200	924,287,050	32,952,700	32,952,700			22,229,450	2.27	잔디유지보수, 부대시설 설치등을 위한 사업비 이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00,000,000	896,399,480	103,600,520	103,600,520			-	0.00	잔디유지보수, 부대시설 설치등을 위한 사업비 이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1,500,000,000	4,442,900	1,495,557,100			1,495,557,100	-	0.00	부지매입 등 사전 절차이행(2018~2021년 계속비 사업)
	신도안면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180,000,000	169,719,590	10,280,410	10,280,410			-	0.00	잔디유지보수, 부대시설 설치등을 위한 사업비 이월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88,220,000	1,039,300,000	48,920,000	48,920,000			-	0.00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 및 차량출고 기간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지급 지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28,640,000	128,300,000	340,000	340,000			-	0.00	조기폐차 대상자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지급 지연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지원사업	20,000,000	9,5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	2.50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용역비로 용역기간(2018.8~2019.8)까지 명시이월

	폐기물 재활용 증진	53,260,000	31,278,800	17,480,000		17,480,000		4,501,200	8.45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비로 용역기간 연장되어 사업비 사고이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토지매입	50,000,000	2,197,800	47,802,200		47,802,200		-	0.00	부지매입비 중 일부매입비로(구거-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51,800,000	123,066,700	22,040,700	22,040,700			6,692,600	4.41	이월사유(예산일부이월사유) -용역기간 : 2018.6-2019.1(일부 선금금 지급 후 이월) 지출액사용처 -용역 : (사)충청산업연구원 -출연금 : 충남신용보증재단 집행잔액발생이유 : 용역 계약 잔액
농림과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	44,550,000	4,950,000	37,404,240		37,404,240		2,195,760	4.93	신청저조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되어 이월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인삼 양액 제어 장치)	45,000,000	-	41,665,000		41,665,000		3,335,000	7.41	이상기온 발생에 따른 인삼파종 예정지에 양액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상기온 등으로 설치사업이 지연되어 이월
	양봉농가 사료지원 (도비)	8,940,000	-	8,940,000	8,940,000			-	0.00	2018년 9월 시달된 사업으로 연도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어려움에 따른 이월 후 사업추진중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	247,086,000	4,134,000	242,952,000	242,952,000			-	0.00	국도비사업으로 국도비가 9월에 교부되어 연내사업 불가하여 이월
	치유의 숲 조성	1,685,199,600	416,296,460	1,242,249,300		1,242,249,300		26,653,840	1.58	계속비사업으로 다음년도에 추진할 사업비 이월
	2018년도 금남정맥 등산로 정비 사업	60,000,000	-	60,000,000	60,000,000			-	0.00	도의원사업비로 예산교부가 10월에 되어 동절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2,700,000,000	522,336,660	2,177,663,340		2,177,663,340		-	0.00	계속비사업으로 다음년도에 추진할 사업비 이월
	공원녹지 기본계획	101,100,000	61,000,000	40,100,000	40,100,000			-	0.00	용역기간이 2018년 2월~2019년 8월까지로 이월
건설교통과	마을단위 종합개발 (입암선바위) 사업	764,480,000	580,841,650	183,638,350		183,638,350		-	0.00	계속사업('17~'19년)으로 전년도 사업비 이월
	마을단위 신규마을 (향리리신규마을 조성) 사업	995,000,000	-	995,000,000		995,000,000		-	0.00	계속사업('17~'19년)으로 전년도 사업비 이월
	시군역량강화	46,500,000	1,326,800	39,560,000		39,560,000		5,613,200	12.07	이월사유:역량강화사업계획행정절차이행에따른이월 집행잔액사유:도급자선정에따른입찰잔액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소외 5지구)	3,300,000,000	165,053,100	3,134,946,900		3,134,946,900		-	0.00	계속사업('18~'20년)으로 전년도 사업비 이월
	파라디아(아)-유동리 도시계획도로(중로1-3호) 개설사업	2,394,775,990	1,958,288,230	436,487,760		436,487,760		-	0.00	토지보상협의 지연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소로 1-40호) 개설 사업	3,768,558,780	3,095,490,500	673,068,280			673,068,280	-	0.00	계속비사업('19년까지)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개설사업(중로1-20호)	1,679,732,200	84,039,400	1,595,692,800			1,595,692,800	-	0.00	계속비사업('20년까지)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 도로확장 개설(대로1-3호)	1,100,000,000	364,547,760	735,452,240			735,452,240	-	0.00	계속비사업('20년까지)
	향한리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 개설 사업	100,000,000	76,697,000	18,378,000		18,378,000		4,925,000	4.93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용역사 도산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워 용역사 재선정
	소라실(구)도시계획도로(소로1-15호) 개설공사	70,000,000	-	70,000,000	70,000,000			-	0.00	계속비사업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2019년 용역추진을 위해 이월
	장기 미집행 도로 토지보상	3,600,000,000	600,756,080	2,999,243,920			2,999,243,920	-	0.00	계속비사업('20년까지)
	밀목재 사면 정비공사	1,000,000,000	9,500,000	990,500,000	990,500,000			-	0.00	사면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비 명시이월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642,680,000	625,924,860	1,643,380		1,643,380		15,111,760	2.35	이월사유:제품조달청자체검수지연 집행잔액사유:사업발주(입찰)잔액
도시주택과	도시 기본 계획	300,000,000	220,177,000	79,823,000			79,823,000	-	0.00	추진중인계속사업으로집행시기미도래(정상추진중)
군문화엑스포지원단	계룡제일문(가칭) 설치	65,000,000	-	65,000,000			65,000,000	-	0.00	제일문 실시설계용역 진행중 용역사 포기로정산후 타용역사 계약하여 설계용역진행중(2019.4.4~9.30)
	계룡제일문 주변 쉼터 조성	60,000,000	-	60,000,000	60,000,000			-	0.00	안산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 용역 진행중으로 행정절차이행(道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을 위하여 용역 중지 상태로 금년내 용역 완료 예정
	군문화축제 상설공연장 설치사업	600,000,000	-	600,000,000	600,000,000			-	0.00	실시설계완료(2019.4.16.)예정/ 道계약 및 일상 감사 진행 중으로 5월 착공예정
보건소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지원	904,300,000	31,848,600	872,451,400	414,937,930	457,513,470		-	0.00	부지선정 지연

2018회계연도에 이월한 사업은 11개 실·과·소에서 총 54건에 25,812,930,400원에 달하며 이는 11개 실·과·소 총예산 46,241,712,920원의 5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 ①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 ②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 ③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하는 제도

□ 개선이 필요한 사항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하고 당해연도 내에 예산액을 집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데, 11개 실·과·소에서 이월한 예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55.8%를 차지하고 있음은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액을 이월 할 때는 사업의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해야 함에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예산 12,901,000원(펜싱팀국제대회참가여비)을 이월하였는데, 사업성격상 사고이월 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용역비 22,040,700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2018년 6월에 용역계약을 체결·추진하던 사업으로 사고이월 처리했음이 타당 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교통과에서 ‘시군

역량강화'(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교육, 견학, 컨설팅 등) 예산 39,560,000원을 2018년 12월에 용역계약을 실시하고 사고이월 했는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용역계약 등의 사업을 추진했음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이월예산의 실태를 보면 계약심사 지연, 설계추진 지연, 국도비 교부결정 지연, 특별교부세 확보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에 따른 공사 기간의 부족 등으로 예산을 이월하고 있는데,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 사업시기, 사업의 성질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계획의 수립과 조기발주 등을 통한 사업실행이 필수사항으로 앞으로 이월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을 확정·추진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사업 추진 상 제약조건 등을 미리 분석·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5.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과·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부서명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율	
계	현년도	643,385,137	445,966,847	196,473,340	30.5	
	지난년도	1,666,603,090	227,612,000	1,436,991,750	86.2	
사 회 복 지 실	현년도	210,268,277	178,062,147	32,206,130	15.3	
	지난년도	47,050,000	9,315,140	37,735,520	80.2	
민 원 봉 사 과	현년도	43,287,480	13,836,250	29,451,280	68.0	
	지난년도	267,192,290	105,836,300	161,355,990	60.4	
환 경 위 생 과	현년도	37,685,211	33,402,781	4,282,430	11.4	
	지난년도	7,765,900	169,400	7,596,500	97.8	
지 역 경 제 과	현년도	8,104,220	8,104,220	-	-	
	지난년도	5,634,000	-	3,634,000	64.5	2,000천원 결손
농 립 과	현년도	22,152,194	17,641,204	4,510,990	20.4	
	지난년도	5,097,860	59,900	5,037,960	98.8	
건 설 교 통 과	현년도	208,215,855	117,284,135	90,931,720	43.7	
	지난년도	1,248,197,800	94,415,600	1,153,782,200	92.4	
도 시 주 택 과	현년도	99,458,990	63,642,100	34,871,890	35.1	945천원 결손
	지난년도	80,310,580	15,961,000	64,349,580	80.1	
공공시설사업소	현년도	14,212,910	13,994,010	218,900	1.5	
	지난년도	5,354,660	1,854,660	3,500,000	65.4	

□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수입원 중 하나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됩니다. 2018회계연도까지 사회복지실 등 8개 실·과·소에서는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면서 지난년도에는 총 16억 6천6백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2억2천7백만원을 수납하였고 86.2%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하였으며, 현년도에는 총 6억4천3백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4억4천6백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율은 30.5%에 달합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지난년도까지 징수결정하고 수납하거나 결손 처리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는 90%가 넘는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징수율은 미미하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서는 체납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행방 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등의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결손처분의 요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세외수입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집중관리를 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 공유 및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징수관리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징수가 어렵다고 확인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징수 총괄반을 편성하고 체납자를 원인별 유형별로 분류하는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시길 바랍니다.

6.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종류별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 ㉓=㉔-㉕	조성액 ㉔	사용액 ㉕	
합 계 (8개 기금)	5,994,684	32,690	416,086	383,396	6,027,373
지방채상환기금	39,907	17	17	-	39,924
노인복지기금	462,606	68,446	68,446	-	531,052
자활기금	100,600	51,043	51,043	-	151,643
재난관리기금	491,909	75,655	190,974	115,319	567,563
체육진흥기금	1,350,124	13,667	13,667	-	1,363,791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440,054	△183,073	55,160	238,233	256,981
식품진흥기금	69,302	621	621	-	69,9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3,040,182	6,314	36,158	29,844	3,046,496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금은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자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계룡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은 당해연도 활용 실적이 없는 기금이며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기금 적립만 하고 있고, 2018회계연도 기금의

전체 지출액은 총 383,396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 대비 6.3%에 불과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추진에 있어 기금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 설치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에서 1년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는바 적립기금의 운용 시 예치기간 및 예금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7.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철저

□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편성액	교부액	미교부액	비고
예산미편성	농림과	구제역, AI매몰지 사후관리	국비 도비	- -	2,000 1,000	△2,000 △1,000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국비	-	1,000	△1,000	
예산대비(+) 송금	안전총괄과	폭염대책 및 풍수해	도비	35,240	37,000	△1,760	
	세무회계과	지방세 납세지원서비스	도비	31,000	31,380	△380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비	4,480	11,140	△6,660	
	환경위생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국비	48,134	53,500	△5,366	기금
예산대비(-) 송금 또는 미송금	사회복지실	기 초 연 금	국비 도비	4,628,750 396,750	4,429,425 379,665	199,325 17,085	
		가 정 양 육 수 당	국비 도비	890,403 239,724	720,310 193,930	170,093 45,794	
		자 활 근 로	국비 도비	288,000 36,000	255,838 31,980	32,162 4,010	
		아 동 수 당	국비 도비	678,097 145,307	629,440 134,880	48,657 10,427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훈련	국비 도비	2,263 1,128	1,698 732	565 396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정비	도비	107,100	106,200	900	
	농림과	논타작물 재배 지원	국비 도비	40,800 3,060	7,048 529	33,752 2,531	
	건설교통과	생활환경정비(농소외5지구)	국비 도비	2,310,000 149,000	1,310,000 84,000	1,000,000 65,000	균특
		마을단위종합개발(입암선비위)	국비 도비	392,000 50,400	- -	392,000 50,400	균특
		농소지구도로개설사업	국비	2,100,000	-	2,100,000	균특
	농림과	폭염 및 가뭄 피해 복구비	국비	11,900	-	11,900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비	국비	3,500	-	3,500	
보건소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도비	750	-	750		

□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 목적이 정해져 내시되며,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편성 당시 내시결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보조금이 교부되면 집행하므로 보조금 총사업비(예산편성액) 금액과 보조금 교부 금액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년도 통보된 보조금 금액보다 당해 연도 교부 송금된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바,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을 이용해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농림과 '구제역·AI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등 19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와 다르게 확정교부결정이 있었음에도 변경 내용을 마무리 추경까지 반영하지 않아 예산액과 보조금 수령액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활환경정비(농소외 5지구) 및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국비 23억 1천만원, 도비 1억 4천9백만원 중 각각 13억 1천만원, 8천4백만원만 교부받아 미교부 국도비에 대해서는 자금없는 이월을 하였으며,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국도비 전액을 당해연도에 교부받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일부를 자금없는 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2020년까지 교부 확정된 균특예산 중 21억원을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3회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하는 등 국도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국도비보조금의 예산현액은 39,169백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34,962백만원으로 무려 4,207백만원의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실 4개사업,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수정비', 농림과 '폭염 및 가뭄 피해 복구비' 등 3개 사업 등은 보조금수령액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 결산상 문제는 없으나 마무리 추경 등에서 정리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은 보조금 송금통지 내역 확인 없이 내시결정만으로 집행하여 보조금 미교부액만큼 시비를 더 지출하게 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어 정의】

- 자금없는 이월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 처리
 - 세출결산 총괄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을 포함하고 하단에 ()내서 기재
 -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내서 기재

□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시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교부결정 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가 있을 시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 시 세출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지출은 가능할 것이나 송금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수입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분으로 해당 보조금이 송금되었는지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연찬으로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의견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세외수입 이중부과(사례)

부과일	회계과목	금액(원)	처리내역	비고
2016. 1. 7.	소송회수비용수입 (41-294001)	253,350	미감액	
	소송비용청구료 (41-294006)	253,350	납부(2016. 2. 2.)	
	소송회수비용수입 (41-294001)	253,350	감액(2016. 4. 14.)	
	소송회수비용수입 (41-294001)	253,350	납부(2016. 2. 2.)	

세외수입을 부과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이중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감액결의를 하여 부과취소를 하여야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소관부서 이관 등의 사유로 즉시 조치하지 않아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부과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② 기금운용 현황

기금명	설치연도	운영부서	비고
지방채상환기금	2005	기획감사실	
노인복지기금	2006	사회복지실	
자활기금	2016	사회복지실	
재난관리기금	2004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기금	2008	문화체육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003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03	환경위생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2008	지역경제과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방침을 결정하고 시행하며, 사업 추진 시 여러 요건의 변화로 변경하여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방침을 세워 결재를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③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건에 대해 당초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던 관할 자치단체로 이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어떤 분야이든 행정 처리를 할 때에는 명확하고 신속해야 할 것이며 혹여 착오가 있었다면 인지 즉시 정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의 세가지 사례에서는 이러한 점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